



일선기간별	관할구역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서울특별시 강남구, 서초구, 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영등포구, 강서구, 양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 및 동작구	02-6711-2845
서울북부지사	서울특별시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, 성북구, 도봉구, 강북구, 중랑구 및 노원구	02-3783-8316
강원지사	강원도 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 및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	033-815-1042
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 및 평창군	033-820-2511
부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524
울산지사	울산광역시	052-226-0523
경남지사	경상남도(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 제외)	055-269-0559
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	055-371-7521
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, 화순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장성군, 영광군 및 함평군	062-949-8745
전북지사	전라북도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완주군, 진안군 및 무주군	063-240-8532
전북서부지사	전라북도 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 및 고창군	063-460-3623
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 및 보성군	061-689-4954
전남지사	전라남도 목포시, 무안군, 영암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장흥군, 진도군 및 신안군	061-288-8701
제주지사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05
충부지역본부	인천광역시	032-510-0511
경기지사	경기도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	031-259-7123
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고양시, 파주시,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	031-828-1918
경기서부지사	경기도 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 및 시흥시	031-481-7512
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 및 양평군	031-785-3315
경기중부지사	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	032-680-6545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, 동구, 북구, 수성구, 경상북도 영천시, 경산시 및 청도군, 군위군	053-609-0522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서구, 남구, 달서구, 달성군, 경상북도 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), 고령군 및 성주군	053-650-6834
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 및 울진군	054-271-2032
경북지사	경상북도 구미시, 김천시, 영주시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, 봉화군, 예천군, 의성군, 영양군 및 청송군	054-478-8013
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서산시, 금산군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부여군 및 태안군	042-620-5612
충북지사	충청북도	043-230-7151
충남지사	충청남도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 및 예산군	041-570-34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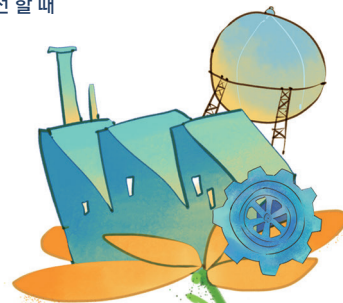
근로자의 안전 ·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

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를

작성 · 제출하여

심사 ·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!

- ✓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설 · 이전 할 때
- ✓ 특정한 설비 및 장치를 신설 · 이전 할 때
- ✓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할 때



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란?

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

업종 또는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

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

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

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

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

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

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


관련근거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8조

－ 미제출 등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－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※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과태료 (1,000만원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제출자 및 제출 시기·서류·방법



●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?
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
● 어떻게 작성 하나요?
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

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

※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39호(2014. 10.29) 참조



※ 제공자료 : 관련법령고시, 신청서 및 제출서식 작성모델

● 제출시기 (작업 시작 15일 전까지)

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,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 기존공장, 임대공장,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.

● 제출서류

－ 신청양식 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」 별지 제25호 서식

※ www.kosha.or.kr

(사업안내/신청-산업안전-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-자료실)

－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2부(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)

● 제출방법

－ 제출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·지사

－ 심사수수료 납부 :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

● 수수료 (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6호)

종 류	규 모	수수료(원)
13대업종에서 일반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	가.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	84,000
	나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미만	123,000
	다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이상	183,000
13대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·이전· 변경하는 경우	－	67,000
5개 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	가. 3기 미만	44,000
	나. 6기 미만	58,000
	다. 6기 이상	67,000
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	－	36,000



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?

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

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

※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
1-2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(9차, 2007년)의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· 기계 · 가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 · 교체 · 개조 · 이설하는 경우(업종은 공장등록증 확인)

업종 코드	표준산업분류 (중분류)	업종 코드	표준산업분류 (중분류)
10***	식품 제조업	261**	반도체제조업
16***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262**	전자부품 제조업
20***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9***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22***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30***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3***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32***	가구 제조업
24***	1차 금속 제조업	33***	기타 제품 제조업
25***	금속가공제품 제조업: 기계 및 가구 제외		

※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[‘09.2.1 이후 적용]

※화학물질 및화학제품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, 전자부품 제조업 [‘14.9.13 이후 적용]

※상기 외 8개 업종 [2012.7.10 이후 적용]

1-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경우

용해로(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)

-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(爐)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

화학설비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“특수화학설비”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



특수화학설비란?

-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
- ② 종류 · 정류 · 증발 ·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
-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-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
-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-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

건조설비

-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
 -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
 - 도로,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
 -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

가스집합용접장치

- 용접 · 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

허가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
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·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· 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(배풍량이 60m³/분 이상)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·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·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(배풍량이 150m³/분 이상)



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

· 디아니시딘과 그 염	· 니켈(불용성 무기화합물)	· 스티렌
·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	· 디메틸포름아미드	· 시클로헥산
· 베릴륨	· 벤젠	· 아닐린
· 벤조트리클로리드	· 이황화탄소	· 아세토니트릴
·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	· 카드뮴 및 그 화합물	· 아연(산화아연)
· 석면	· 톨루엔-2,4- 디이소시아네이트	· 아크릴로 니트릴
·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	· 트리클로로 에틸렌	· 아크릴아미드
· 염화비닐	· 포름알데히드	· 알루미늄
· 오로토-톨리딘과 그 염	· 메틸클로로포름	·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
· 크롬광	(1,1-트리클로로에탄)	· 용접흄
· 크롬산 아연	· 곡물분진	· 유리규산
· 황화니켈	· 망간	· 코발트
· 휘발성 플타르피치	· 메틸렌디페닐디이소	· 크롬
· 2-브로모프로판	시아네이트(MDI)	· 탈크(활석)
· 6가크롬 화합물	· 무수프탈산	· 톨루엔
· 납 및 그 무기화합물	· 브롬화메틸	· 황산알루미늄
· 노말렉산	· 수은	· 황화수소

-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2]
- 분진작업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6]



대상업종

-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, 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)
- 사업 개요
-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
- 기계·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- 기계·설비의 배치도면
-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,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
- 공정배관·계장도(Piping & Instrument Diagram, P&ID)
 - ※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함
- 설비 및 기계 목록(별지 제4호서식)
- 유해·위험물질 목록(별지 제5호서식)
- 방폭전기/계장 기계·기구 선정기준(별지 제6호서식)
- 환기장치 개요(별지 제7호서식)
-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(별지 제8호서식)
-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(전기보호장치 포함)
 - ※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 단선도는 제출 생략 가능
- 폭발위험장소 구분도
- 유해·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
- 화재·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 - ※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·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함

대상설비

공통서류

-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, 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)
- 사업개요
-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- 설비의 도면
-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(Process Flow Diagram, PFD)
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
- 방폭 전기/계장 기계·기구 선정 기준

용해로

-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용해로의 사양서
 - ※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년월, 가열방법(열원의 종류), 표준(최대)투입량, 온도·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
-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
- 용융물 누출,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

화학설비

-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,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공정배관·계장도(Piping & Instrument Diagram, P&ID)
- 유해·위험물질 목록
-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
- 장치 및 설비명세
- 화재·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
건조설비

-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건조설비의 사양서
 - ※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년월, 가열방법(열원의 종류), 표준(최대)투입량, 온도·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
-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
- 환기장치,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, 그밖의 부속 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-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

가스집합 용접장치

- 주요 부속설비(소화,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가스장치실(저장설비) 및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를 포함)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, 제조자 및 제조년월
- 안전기의 종류, 형식, 제조자, 제조년월, 수량, 구조 및 재질
-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
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

-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유해·위험물질 목록
- 환기장치 개요
- 해당 설비의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년월
-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 - ※ 신청서 이외 서류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함
 - ※ 별지 각호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39호(2014.10.29)참조
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

